

교수학습센터 규정

제정 2020. 3. 1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수학습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과 기능) ① 센터에는 교수-학습지원에 관한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수법지원부, 학습법지원부, 의사소통지원부를 둔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, 예.결산 보고
2. 교수-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, 계획수립 및 운영
3. 교수-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통계분석 및 기록물 관리
4. 교수-학습지원에 관한 정보제공, 프로그램의 홍보 및 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
5. 센터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교육
6.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
7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8.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9. 교수-학습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3조 (교수학습운영위원회) ① 본 대학교의 교수-학습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0. 9. 8., 2021. 3. 1.)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2. 교수학습센터 소속 전임교수, 교무처, 기획처, 학생처, 입학처, 인재개발처의 책임급 실무자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1인의 간사를 둔다.
3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4. 위원회 심의사항은 그 결과를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 제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
3. 교수-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수-학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수-학습지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부 칙(2020. 3. 1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관련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벤처창업교육원 규정, 비교과 교육(과정)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본 규정 신설 이전 교수학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벤처창업교육원 규정 제10조 (교수학습 운영위원회)를 적용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